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COB-RA, COC-RA, COF-EA, COF-RA, GDD-RA, IGN, IJA-RA, JFA-RA, JGA-RB, JGA-RC, JGB-RA, JPC-RA, JPD-RC

책임 기관: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ffice of the School System Medical Officer; 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

학생이 연루된 알코올, 대마초, 담배 및 기타 약물 사용 사건에 대한 지침 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Use Involving Students

I. 목적

학생이 연루된 알코올, 대마초, 담배 및 기타 약물 사용 또는 흡연 사건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II. 정의

- A. *Maryland 법에 의하면 약물(Drug)*은 *Maryland 의 위험 통제 물질 법(Maryland Controlled Dangerous Substances Act)*에 의해 규정된 통제되고 위험한 물질, 처방약, 또는 의도하지 않은 유해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 B.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소유재산(property)*이란 MCPS 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모든 학교 또는 그 밖의 건물, MCPS 버스, MCPS 자동차, 건물, 그리고/또는 MCPS 가 스폰서하는 학생활동의 장소를 말합니다.
- C. *흡연(Smoking)*이란 불 붙인 시가, 담배, 파이프, 또는 다른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는 흡연을 모방하는 모든 종류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III. 행정절차

A. 학생 사용 금지

1. 21 세 이상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Maryland 에서 21 세 미만이 합법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제품을 MCPS 소유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a) 알코올,
 - b) 담배(니코틴 함량에 관계없이 전자 흡연 장치 및 이에 사용되는 액체를 포함하며 부속품 및 구성품을 포함함), 그리고
 - c) Maryland 법에 정의된 대마초, 대마초 농축액, 대마초 제품 또는 대마초가 주입된 제품.

2. MCPS 규정 JPC-RA, *학생에게 약물 투여(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에 명시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학생은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각성제를 포함한 규제 약물 또는 의료용 대마초를 학생들이 자가 휴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MCPS 규정 JPD-RC,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증상을 경험하는 학생을 위한 응급관리(Emergency Care for Individuals Experiencing Symptoms of Opioid Overdose)*에 명시된 바와 같이, MCPS 소유지와 학교후원 활동 중에 날록손을 소지한 학생은 날록손을 소지한 것만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DHHS 또는 MCPS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911 에 연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B. 소통

학년도 초에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알코올, 대마초, 담배, 기타 약물 없는 스모크 프리 교습, 학습, 그리고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정책, MCPS 의 규정, 그리고 관련 법률을 서면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C. 확인과 도움

1. 만일, 학생의 교사가 판단하기에, 학생이 건강 관련 증상을 보이거나 수업시간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학생은 학교 보건실로 보내져 학교건강 절차를 따르게 되며 이는 학교장에게 보고됩니다.
2. 주법은 교사, 카운슬러, 학교장, 또는 다른 전문 교육자에게 약물중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에게 특정 보호를 제공합니다. 상담이나 학생의 정보세션 중에 얻은 정보나 관찰된 점은 비밀이 보장되며 그외의 다른 절차로부터 보호됩니다.
3. 학생이 가장 최대한 빨리 적절한 시간에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용기를 줘야 합니다. 교육자의 판단으로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학생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이 즉각적인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부모/후견인의 참여 여부는 학생과 교육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학교장, 학부모 그리고/또는 보호자, 학교보건 간호사/의료 전문가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보고

1.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대마초, 담배, 또는 다른 약물의 소지, 사용, 또는 분배 또는 흡연의 모든 건은 학교장/디렉터 또는 대리인에게 보고됩니다.
2. 학교장/디렉터 또는 대리인이 법에 저촉된 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는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되며 학부모/보호자, 해당 MCPS 사무실, 법 집행 기관 또는 응급서비스에 연락; 사건 보고; 적절한 경우, 정보 공개를 위해 MCPS 규정 COB-RA,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 의심되는 물건 취급

MCPS 직원은 학생의 소지품 조사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Office of Systemwide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OSSEM) 및/또는 MCPS 규정 JGB-RA,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만일 MCPS

직원이 알코올, 대마초 또는 다른 약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소지할 경우, 물질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1. OSSEM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절한 안전절차를 사용하여, 약물을 봉투에 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용기에 담고 밀봉합니다.
2. 날짜, 시간, 그리고 어떻게 얻었는가를 밀봉용기 위에 써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학생과의 약물 상담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회의에서 얻은 것일 경우, 물질을 소지했던 학생의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3. 의심되는 물질은 MOU-CEO 와 MCPS 규정 COB-RA,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게 될 학교장/디렉터 또는 대리인에게 인계합니다. MOU-CEO 는 사법당국이 다음의 조사를 인도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
 - (1) 배포 또는 제조, 또는
 - (2) 소지, 또는
 - (3) 통제된 위험 물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4. 학생이 학교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물질을 소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 이상으로 보이기 합리적으로 충분한 양을 소지한 것은 *MCPS 에서의 학생 행동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에 명시된 징계조치를 상향조정하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대리인은 해당 물질이 학교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지, 개인적인 용도 이상으로 보이는 합리적으로 충분한 양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절한 분석 전문가(외부 전문가일 수 있음)와 협의 할 수 있습니다.

F. 결과

1. 소유지에서 알코올, 대마초, 담배, 또는 다른 약물을 소지, 사용, 또는 분배한 학생은 *MCPS 에서의 학생 행동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2. 학과 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학교 내 그룹의 리더십 포지션을 지원한 학생은 **MCPS** 소유지 밖에서도 알코올, 대마초, 담배, 또는 다른 약물남용에 대한 추가적 제한에 동의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Criminal Law Article §5-101, §5-602, §5-602, §5-624, and 5-627(a); Education Article §7-412 and § 26-103; Health-General Article §8-101 (i); Alcoholic Beverages and Cannabis Article;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09.12.23.01

규정 역사: 이전 MCPS 규정 번호 285-10, 1976년 12월 29일 ; 1986년 10월 갱신; 2013년 12월 19일 갱신; 2014년 8월 11일 갱신; 2023년 7월 19일 갱신.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로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ffice of Well-being, Learning and Achievement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5630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